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연월일	2021. . . (제 회)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서욱 (국방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1. . .

법제처 심사 전

1. 제정이유

성폭력범죄, 군인등 사망사건 관련 범죄 및 군인등이 그 신분취득 전에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군사법원의 재판권에서 제외하여 일반 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하도록 「군사법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군사법원법」 제2조 제2항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한 수사절차 등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군 수사기관 등의 상호협력 내용 등 신설

1) 상호협력의 원칙(안 제3조)

군검사, 군사법경찰관, 검사, 사법경찰관은 상호 존중해야 하며, 수사,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와 관련하여 서로 협력하도록 함.

2) 각급 부대의 장, 관할부대장 등의 수사 등 협조(안 제4조)

각급 부대의 장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요청에 협조하고, 관할부대장등은 출입조치 등에 협조하도록 함.

3) 수사협의회의 개최 등(안 제5조)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범죄에 대한 수사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협의가 필요한 경우 수사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함.

나. 국방부장관의 기소 결정 및 사건의 이첩 등 규정 신설

1) 국방부장관의 기소 결정 및 취소 절차 등(안 제6조)

국방부장관이 군사법원에 기소하도록 결정을 하는 경우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고, 검찰총장이 의견을 제시하거나 기소 결정에 대하여 취소를 구하는 신청을 하는 경우 관계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함.

2) 재판권이 없는 사건의 이첩(안 제7조)

군 수사기관이 군사법원에 재판권이 없는 사건을 인지한 경우 대검찰청 등에 사건을 이첩하도록 하고, 사건기록 등을 관할 수사기관에 직접 송부할 수 있도록 함.

다. 「군사법원법」 제2조 제2항의 범죄의 수사절차 등 관련 규정 신설

1)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보호(안 제8조)

성폭력범죄가 발생하는 경우 각급 부대의 장이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 등의 피해자 보호조치를 하도록 함.

군 수사기관이 성폭력 사건을 이첩하는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사항을 명시함.

2) 군인등 변사사건의 처리(안 제9조 및 제10조)

군인 등 변사사건이 발생한 경우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이 검사 및 사법경찰관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하고, 현장을 보존하도록 함.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이 검시 또는 검증을 하는 경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그 일정을 통지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함. 하고, 군검사는 범죄 혐의가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해당 변사사건을 인계할 수 있도록 함.

3) 체포·구속영장의 집행(안 제11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병영 등에 있는 군인등에 대해 체포·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경우 해당 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항을 알리고 협조를 구할 수 있도록 함.

4) 체포·구속 및 석방의 통지(안 제12조 및 제13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군인 등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는 경우 부대장 등에게 그 일시 및 장소를 통지하도록 하고, 체포 또는 구속한 피의자를 석방하는 경우에도 부대장 등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도록 함.

5) 수사 등의 촉탁(안 제14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수사 등을 촉탁하는 경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도록 하고, 촉탁 및 이행 결과 통지의 방법을 구체화함.

6) 민감정보 등의 처리(안 제15조)

수사기관이 이 영에서 정하는 수사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 민감정보 등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군사법원법, 형사소송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각 군 의견수렴 및 법무부, 경찰청, 해양경찰청과 합의 완료

라. 기 타 : 1) 제정령안, 별첨

2) 입법예고(2020. 0. 00. ~ 0.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 호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정령안

제1조(목적) 이 영은 「군사법원법」 제2조제2항에 따라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를 수사하기 위한 절차 및 방법과 상호협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인 등의 인권을 보호하고, 수사절차의 투명성과 수사의 효율성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군사법원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서 정한 「군형법」 제1조제1항부터 제3항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군인 등”이라 한다)이 범한 성폭력범죄, 군인 등이 사망하거나 사망에 이른 경우 그 원인이 된 범죄 및 군인 등의 신분취득 전에 범한 범죄(이하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범죄”라 한다)의 수사절차 및 이를 위한 군검사, 군사법경찰관과 검사, 사법경찰관 간의 상호협력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상호협력의 원칙) ① 군검사, 군사법경찰관과 검사, 사법경찰관은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범죄의 수사,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와 관련하여 협력해야 한다.

② 군검사, 군사법경찰관과 검사, 사법경찰관은 수사와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수사·기소·재판 관련 자료를 서로 요청할 수

있다.

③ 군검사, 군사법경찰관과 검사, 사법경찰관의 협의는 신속히 이루어져야 하며, 협의의 지연 등으로 수사 또는 관련 절차가 지연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4조(부대장 등의 수사협조) ① 피의자 또는 사건관계인이 소속된 각급 부대·기관의 장 또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에 따른 관할 부대장 및 관리부대장(출입의 경우 주둔지부대장을 포함한다, 이하 “부대장 등”이라 한다)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범죄의 수사과 관련하여 요청하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에의 출입,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의 출석, 「형사소송법」 제199조제2항에 따른 보고 등(이하 “출입 등”으로 한다. 이 조에서 같다)에 관하여 지체 없이 협조하여야 한다.

② 부대장 등은 국가안전보장, 군사기밀보호, 기타 이에 준하는 사정이 있어 제1항의 요청에 즉시 협조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과 신속히 협의하여 원활한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부대 일정 등을 고려한 출입 등 일정의 조정
2. 사전 보안조치 및 보안교육 등 출입 등에 필요한 행정사항
3. 기타 원활한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③ 부대장 등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법원에 재판권이 있는 범죄를 신속하게 수사할 필요가 있거나 이와 관련된 신고를 받아 긴급한 출입을 요

청하는 경우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간이한 절차를 통하여 해당 시설을 출입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수사협의회) ① 국방부, 대검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청 또는 해양경찰청은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범죄에 대한 수사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협의 또는 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관 상호간 수사협의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6조(국방부장관의 기소 결정 등) ① 국방부장관이 법 제2조제4항에 따라 해당 사건을 군사법원에 기소하도록 결정을 한 때에는 검찰총장 및 고소권자(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나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를 포함한다.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그 취지와 이유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의 결정 전에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검찰총장은 제2항에 따른 의견을 제시하거나 법 제2조제5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의 기소 결정에 대하여 취소를 구하는 신청을 하는 경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7조(사건의 이첩) ①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법 제228조제3항에 따라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범죄에 대한 고소·고발·진정·신고 등을 접수하거나 해당 범죄가 발생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을 발견하는 등 범죄

를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대검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또는 경찰청에 사건을 이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건을 이첩받은 기관은 이첩된 사건 중 해양 관련 사건을 해양경찰청에 이첩할 수 있다.

③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사건을 이첩하는 경우 대검찰청 또는 경찰청이 지정하는 해당 사건 관할 지방검찰청(지방검찰청지청을 포함한다), 경찰관서 또는 제2항에 따라 이첩한 해양경찰관서로 관계 서류와 증거물 등을 송부할 수 있다.

제8조(성폭력범죄 피해자의 보호) ① 부대장 등은 그 부대·기관에서 법 제2조제2항제1호의 범죄(이하 “성폭력범죄”라 한다)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현장 출입의 통제, 현장의 보존 등 현장에서 필요한 조치와 피해자 구조·구급, 성폭력범죄 가해자·피해자 분리 조치 등 피해자를 위한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제7조제1항에 따라 성폭력범죄 사건을 이첩하는 과정에서 성적 불쾌감 또는 공포감을 느끼는 등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 사항 등이 공개되거나 타인에게 누설되지 않도록 할 것
2. 해당 범죄와 무관한 피해자의 사생활 등에 대한 질문 또는 진술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할 것

제9조(군인 등 변사사건에 대한 통보 등) ①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변사자 또는 변사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체를 발견한 때에는 검사 및 사법경찰관에게 변사사건 발생 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이 법 제264조에 따른 검시 또는 검증을 하는 경우 검사 및 사법경찰관에게 그 일정을 미리 통보하고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③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제2항에 따라 통보한 검시 일정 전에 변사자의 위치, 상태 등이 변경되지 아니하도록 현장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증거가 유실될 우려가 있는 등 긴급한 경우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통보를 받고 검시 또는 검증에 참여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필요한 경우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10조(변사사건의 처리) 군검사는 변사자를 검시 또는 검증한 결과 법 제2조제2항제2호의 범죄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경우 제9조제4항에 따라 제시받은 의견을 고려하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해당 변사사건을 인계할 수 있다.

제11조(체포·구속영장의 집행)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을 병영이나 그 밖의 군사용 청사·함선에 있는 군인 등에 대하여 집행하는 경우에는 그 군인 등이 소속된 부대장 등 또는 그를 대리하는 사람에게 체포·구속영장의 집행 사실을 고지하고 피의자의 인도 요구 등 그 집행을 위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군사용 청사·함선 밖에 있는 군인 등이라도 현재 근무 중인 군인 등에

대하여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을 집행할 때에는 제1항과 같이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요청을 받은 사람은 지체 없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2조 (체포·구속의 통지)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군인 등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는 경우, 지체 없이 군인 등 피의자가 소속된 부대장 등에게 체포·구속의 일시 및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지는 문서 또는 전화, 팩스, 전자우편, 기타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문서로 통지하지 않은 경우 사후에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 (석방의 통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체포 또는 구속한 피의자를 석방하는 경우 지체 없이 그 피의자의 소속 부대장 등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수사 등의 촉탁)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법 제228조제4항에 따라 촉탁을 하는 경우 수사절차의 신뢰성, 수사의 효율성, 사건관계인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촉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전화, 팩스, 전자우편, 기타의 방법으로 먼저 통지하고, 가능한 가장 빠른 일자에 해당 문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③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제1항에 따른 촉탁을 이행하고 그 결과를 관계 서류 및 증거물과 함께 서면으로 검사 또는 사법경찰

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5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 군검사, 군사법경찰관과 검사, 사법경찰관 및 부대장 등은 이 영에서 정하는 수사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나 그 밖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부 칙

이 영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방부 법무관리관실 법무과	
연 락 처	(02) 0000 - 0000